

勞 動 經 濟 論 集
第18卷(1), 1995. 12. pp.107~12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青年層 労動者의 雇傭問題와 失業確率의 決定要因 分析

曹 尤 鉉*

< 目 次 >

| | |
|----------------------|--------------------|
| I. 머리말 | 探索 失業模型의 延長 |
| II. 青年層 失業問題의 深刻性 | IV. 失業確率의 推定과 그 結果 |
| III. 本 論文의 接近方法 : 職場 | V. 結論과 政策含意 |

I. 머리말

이 논문¹⁾에서 필자는 첫째, 청년층(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의 고용문제, 즉 실업문제가 몇몇 연구[이주호(1993), 박기성(1994), 최경수(1995)]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로 노동자의 실업확률의 추정을 통하여 청년층 노동자의 실업이 직장탐색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노동공급측 요인에 의해, 즉 노동자의 보상요구 임금(reservation wage)이 잠재적 시장임금(imputed wage)²⁾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지표인 가구소득의 크기가 청년층 실업확률

* 중실태 경제학과 교수

- 1)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응모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실증분석작업을 도와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권혜자씨와 노사관계대학원 김인선씨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초고단계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박기성 교수, 최경수 박사, 윤건수 박사, 배진한 교수 및 이정우 교수 그리고 1995년 노동경제학회 상반기 정기연구발표회에서 논평해 준 정인수 박사와 윤석천 교수에 감사드린다.
- 2) 보상요구임금(reservation wage)이란 각 근로자가 노동시장참여를 위하여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상수준을 나타내는 임금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잠재적 시장임금(imputed wage)이란 각 근로자의 특성과 개인의 생산성 수준을 가늠하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임금이다.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청년층 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최근 이주호(1993)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를 이용하여 1992년 우리나라 전체의 실업률이 2.4%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 층 노동시장에서 15~19세 연령층 노동자의 실업률은 11.9%, 20~24세 연령층 노동자의 실업률은 9.9%로 대단히 높다고 밝히고, 더 나아가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 비해 대체로 각각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15~29세 청년층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15~24세의 연령계층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또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보다 현격히 높고, 경쟁대상국인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기성(1993)은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에서 청년층의 낮은 취업비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통계청의 『고용구조조사보고서』(1992)를 이용,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취업비율이 15~19세, 20~24세, 25~29세의 연령 계층에서 각각 7.0%, 46.5%, 85.3%로 일본의 17.9%, 71.7%, 94.2%보다 현격히 낮으며, 대만의 20.2%, 64.8%, 91.9%보다도 크게 낮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와 박기성의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높은 실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기준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연보』와 『고용구조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서술적으로 밝혔다는 특징을 갖는다. 필자는 良質의 미시적인 가구조사자료인 대우경제연구소의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기존 통계에서 나타난 청년층 노동자의 높은 실업률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기존 통계에서 는 포착되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the hidden unemployment)³⁾ 수를 새로이 추산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합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정의하며, 사실상의 실업자는 청년층에서 약 80만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 통계에서 나타난 이미 높은 유휴인구(예컨대 이주호(1993)는 청년층 유휴인구를 실업자와 비통학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하고 이 규모를 약 45만명으로 추정하였다)보다 높은 수준임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청년층 노동자 중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수는 기존 통계에 나타난 이미 높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청년층 노동자의 높은 사실상의 실업률이 확인될 때 제기되는 문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낳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 원인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학교로부터 직장에의 이행경로에 있어서 복합적인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점, 예컨대 산업수요와 연계되지 않는 획일적 교육제도, 기업 내부에서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체계프로그램의 결여, 그리

3) 잠재실업자는 엄밀히 표현하자면 은폐된 실업자이다.

고 학교와 기업간을 연계시키는 직업정보네트워크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는 이주호(1993)와 최경수(1995)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기회의 부족으로 졸업후 겪는 마찰적 실업, 2년 안팎의 군복무로 인한 빈번한 실업, 매년 수만명에 달하는 재수생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는 박기성(1993)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즉 이주호는 노동시장의 작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문제점을 중시하는 제도학파 노동경제학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박기성은 청년층 노동자의 공급체계인 교육제도의 경직성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행하도록 자극하며, 학교에서 직장으로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좀더 나은 직장을 찾아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업은 보다 나은 구직·구인 연결(job match)을 가능하게 하므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은 별다른 문제점을 갖지 않는다는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사실상의 실업자의 보상요구임금(reservation wage)과 잠재적 시장임금(imputed wage)을 비교하여 보상요구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실업이 되는가, 아니면 보상요구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되는가에 관한 모형, 즉 실업확률모형의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해명하게 된다. 만약 실업자의 보상요구임금이 잠재적 시장임금보다 높아서 실업확률이 높아지면 이는 직장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이거나 또는 실업자의 노동공급상의 능력, 즉 교육, 직업훈련이 부족하여 실업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교육, 직업훈련을 통한 개인능력의 향상과 직업정보제공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것이다. 만약 실업자의 보상요구임금이 잠재적 시장임금보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확률이 높다면 이는 비자발적·구조적 실업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비자발적·구조적 실업은 다음 두가지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첫째는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구인·구직 연결의 부적절성(job mismatch)이다. 보상요구임금이 선호체계에 의해 결정되고 잠재적 시장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 즉 그 노동자가 보유한 특정의 인적자본에 대한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상요구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에도 실업확률이 높다면 이는 노동자가 보유한 인적자본에 대한 산업수요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구인·구직 연결의 부적절성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내부에 노동자의 경력개발경로(career development path)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근무환경, 장래성, 안정성 등이 노동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른 실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호(1993), 최경수(1995)의 주장과 같이 산업수요와 연결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교육제도

와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조우현(1994)의 주장과 같이 기업의 내부노동시장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삶의 보람과 일에서 오는 만족감을 제공하는 비금전적 측면의 제도개선을 행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필자는 가구소득이 개인의 실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이 빈번히 실업을 경험하는지 여부는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적 처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빈번히 실업을 경험하면 실업의 부작용으로 직업현실에서 필요한 인적자본 축적이 저해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로 장래의 임금상승이 억제당하게 되면⁴⁾ 한편으로는 근로자가구의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에의 투자로 실직 위험을 회피하려는 유인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고학력화, 교육의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교육투자는 사회적 자원낭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가 보상요구임금이 높아서 발생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인 가구소득의 크기가 청년층 실업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청년층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단히 유용한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II. 青年層 雇傭問題의 深刻性

1. 使用된 資料와 青年層 雇傭構造의 主要指標에 관한 定義

이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이하 『패널』)는 총화확률 표본 추출방식(stratified random sampling)에 의거, 전국 4,547가구의 18세 이상 가구원 10,460명에 대한 면접조사이며, 1993년은 8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1997년 까지 5개년간 매년 동일한 표본가구로부터 가구 및 가구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이 조사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패널자료가 될 예정으로 있다. 이 자료에서 포착되는 취업자, 실업자,

4) 어수봉(1995)은 우리나라에서 구인·구직 연결, 즉 '일궁합'(job match)이 적절하지 않을 때 '직장이동'을 통해 '일궁합'이 개선되지 않고, 일단 결정된 '일궁합' 상태는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성이 강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논리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실업자의 경력의 상실은 나중에 이들의 임금상승의 제한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층의 실업이 실질적으로 나중의 임금상승제한으로 귀결되는가에 관한 실증분석은 앞으로의 또다른 연구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정의와 취업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경제활동인구 중 사실상의 실업자와 순수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패널』은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그 응답 카테고리는 ① 봉급생활(상근직, 정규피고용), ② 자영업·자유업, ③ 농림수산업, ④ 비정규직 종사(계약, 임시, 일용직), ⑤ 미취업(취업준비), ⑥ 무급가족 종사자, ⑦ 가사·전업주부, ⑧ 학업(학생, 재수생 포함), ⑨ 청소년·아동, ⑩ 연로, ⑪ 군복무(의무), ⑫ 기타 등이다. 이 중 ①~③이면 취업자이며, ⑥ 무급가족종사자 중 지난 1주일간 18시간 이상 근로한 자 또한 취업자이다. 그리고 ④~⑫까지 응답한 자 중에서 18시간 이상 근로한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하고 지난 1주일간 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자가 취업자로 분류된다.⁵⁾

취업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지는데, 정규직은 ① 봉급생활자로서 조사대상자의 직장에서 그에게 규정된 근무시간이 1주일에 36시간 이상인 자, ② 자영업·자유업 종사자, ③ 농림수산업 종사자, ④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지난주 18시간 이상 근로한 자로 정의할 것이다. 취업자 중 정규직으로 정의되지 않는 자는 비정규직이 된다. 필자의 정의에는 계약, 임시,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봉급생활자(상근직, 정규피고용 종사자)들 중에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36시간 미만이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특징을 갖는다. 왜냐하면 노동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주당 36시간 미만의 일을 하면, 이는 파트타임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이나 『고용구조통계조사』(이하 『고용구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1주간에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일을 하는 자'의 개념을 파트타임 근로자로 간주하면, 실제로 파트타임인데도 불구하고 36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패널』에 의해 노동수요측의 요구에 의한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취업자를 파악하는 것은 『경활』 또는 『고용구조』에서 파트타임을 파악하는 것보다 강점을 지닌다. 필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지 임금근로자에 국한되고 자영업·자유업 종사자, 농림수산업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실업자는 『패널』에서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는 가장 주된 활동이 비정규직·기타에 속하면서, 첫째 위에서 정의한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자로서, 둘째 지난 주 구직활동을 한

5) 우리의 취업자 정의에서는 다음의 범주가 추가된다. 지난 1주간 1시간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및 즉시 취업 가능하지 않은 이유로서 조사대상자가 '비정규직이지만 다니는 직장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자도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사업체)을 갖고 있는 자는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자이며, 셋째 지난주 즉시 취업 가능했던 자로 정의된다. 단, 1주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가족 종사자는 구직활동을 하였고 즉시 취업 가능했던 자만 실업자이며, 그 이외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정의된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은『패널』의 18세 이상의 조사대상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된다.『패널』은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가장 주된 활동이 봉급생활, 자영업, 농림수산업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현재 일정한 직장에 정규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직장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그렇다’라고 답하면 구직방법, 희망 직장, 희망 직장형태, 희망 월평균급여를 묻는데, 필자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자로서 현재 일정한 직장에 정규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자를 잠재실업자로 정의할 것이다.⁶⁾ 통계청의『경활』과『고용구조』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알맞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하겠는가”라고, 조사대상자에게 취업에 관한 주관적 의사를 물어보고 있으나,『패널』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구직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들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잠재실업자를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잠재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를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로, 그리고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합을 ‘사실상의 실업자’로 정의할 것이다.⁷⁾ 순수 비경제활동인구와 사실상의 실업자는 통계청의『경활』과『고용구조』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개념이며,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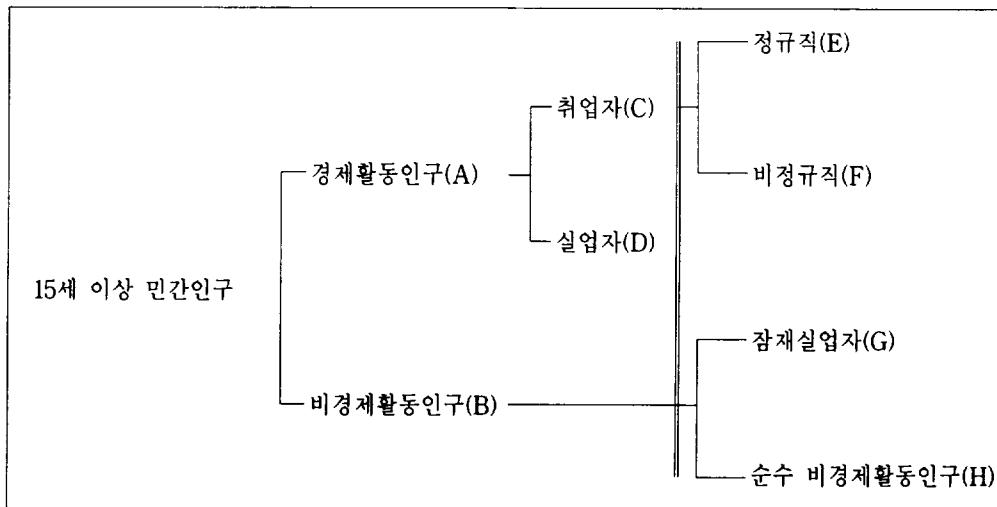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전에 전통적으로 ILO 기준에 의한 통계청의『경활』과『고용구조』의 고용통계의 주요개념과 대비하여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고용통계의 주요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ILO 기준에 의한『경활』과『고용구조』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를 경제활동인구(즉 취업자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그림 1]에서 A($=C+D$)와 B가『경활』과『고용구조』의 주요 고용지표이다(이하 A에서 H까지 영문자 표시는 그림 1 참조).

그러나 우리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잠재실업자(G)와 순수 비경제활동인구(H)로 나누었고,

6)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를 식별하는 전통적 방법은 지난 4주간(또는 지난 6개월간)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조사시점기준인 지난주에는 비경제활동인구였으나 조사시점인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난주 기준으로 잠재실업자로 간주하는 방법을택한다. 전자의 방법은 지난주 기준으로 과거의 구직정보를 묻는 것이며, 후자의 방법은 지난주 기준으로는 미래인 현재에 있어서 정규직 구직활동 정보를 묻는 것이다.

7) 지난주 기준으로는 실업자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취업된 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정의된 사실상의 실업자는 실제 실업자를 다소 과대추정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정의된 사실상의 실업자에 관한 이러한 한계는 배무기·박기성과의 토론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우의『패널』자료에서는 지난주 기준 실업자였으나 현재 취업된 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우리는 엄밀한 사실상의 실업자 추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 두겠다.

[그림 1] 노동력 상태



잠재실업자(G)와 실업자(D)의 합을 사실상의 실업자($D+G$)로 정의하였던 것이다.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개념이 설정되자마자 15세 이상의 민간인구는 취업자(C), 사실상의 실업자($=D+G$), 순수 비경제활동인구(H)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는 사실상의 실업률은 ($C+D+G$) 중에서 ($D+G$)의 비중이며 잠재실업률은 ($C+D+G$) 중에서 G의 비중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취업자와 사실상의 실업자는 고용불안정인구($=F+D+G$)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text{사실상의 실업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실업자} (=D+G)$$

$$\text{사실상의 실업률} = (D+G)/(C+D+G) \times 100$$

$$\text{잠재실업률} = G/(C+D+G) \times 100$$

2. 青年層 労動者의 높은 失業率, 潛在失業率 및 事實上의 失業率

『경활』 및 『고용구조』와 『패널』 간의 이러한 차이점을 유의하면서 앞절에서 설명한 고용의 諸지표의 정의에 따라 『패널』의 18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고,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정규직+비정규직)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와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로 세분화한 것을 우리는 <표 1>로 정리하였다. 노동력 상태가 전체, 남자, 여자별로 나타나 있고, 동시에 연령계층에 따른 노동력 상태도 제시되어 있

<표 1> 고용구조의 諸 지표

| | | 청년층 18~29세 | 장년층 30~54세 | 노년층 55세 이상 | 전연령층 (18세 이상) |
|--------|------------|---------------|---------------|---------------|------------------|
| 전 체 | 경제활동인구 | | | | |
| | 정규직 | 1,066(37.2) | 3,396(57.4) | 658(39.1) | 5,120(48.9) |
| | 비정규직 | 295(10.3) | 563(9.5) | 135(8.0) | 993(9.5) |
| | 실업자 | 133(4.6) | 106(1.8) | 27(1.6) | 266(2.5)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잠재실업자 | 125(4.4) | 71(1.2) | 8(0.5) | 204(2.0) |
| | 순수 비경제활동인구 | 1,247(43.5) | 1,776(30.0) | 854(50.8) | 3,877(37.1) |
| 소 계 | | 2,866(100.0) | 5,912(100.0) | 1,682(100.0) | 10,460(100.0) |
| 남 자 | 경제활동인구 | | | | |
| | 정규직 | 585(48.6) | 2,695(87.8) | 469(60.8) | 3,749(37.2) |
| | 비정규직 | 125(10.4) | 224(7.3) | 61(7.9) | 410(10.3) |
| | 실업자 | 69(5.7) | 41(1.3) | 17(2.2) | 127(4.6)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잠재실업자 | 62(5.2) | 20(0.7) | 6(0.8) | 88(4.4) |
| | 순수 비경제활동인구 | 362(30.1) | 90(2.9) | 218(28.3) | 670(43.5) |
| 소 계 | | 1,203(100.0) | 3,070(100.0) | 771(100.0) | 5,044(100.0) |
| 여 자 | 경제활동인구 | | | | |
| | 정규직 | 481(28.9) | 701(24.7) | 189(20.8) | 1,371(25.3) |
| | 비정규직 | 170(10.2) | 339(11.9) | 74(8.1) | 538(10.8) |
| | 실업자 | 64(3.9) | 65(2.3) | 10(1.1) | 139(2.6)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잠재실업자 | 63(3.8) | 51(1.8) | 2(0.2) | 116(2.1) |
| | 순수 비경제활동인구 | 885(53.2) | 1,686(59.3) | 636(69.8) | 3,207(59.2) |
| 소 계 | | 1,663(100.0) | 2,842(100.0) | 911(100.0) | 5,416(100.0) |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자료 : 『패널』, 1993, 원테이프.

다. 즉 18세~29세를 청년층, 30~54세를 장년층, 5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계층의 노동력 상태 또한 <표 1>에 실려 있다.

<표 1>을 근거로 하여 잠재실업률, 사실상의 실업률을 계산한 것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 나타난 청년층 고용구조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년층 실업률 8.9%는 장년층 실업률 2.6%보다 3배 이상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남자의 실업률 8.9%는 장년층 남자 실업률 1.4%보다 6배 이상이며, 청년층 여자의 실업률은 9.0%로 장년층 여성의 실업률 5.9%보다 약 3.1%포인트 높다. 즉 청년층 남성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청년층이 대단히 높으나, 장년층 여성의 실업률

<표 2> 실업률, 잠재실업률, 그리고 사실상의 실업률

(단위: %)

| | 『페널』 | | | 『고용구조』 | |
|-----|------|-------|-------------|--------|--------------|
| | 실업률 | 잠재실업률 | 사실상의 실업률 | 실업률 | 주관적 잠재실업률 |
| 전체 | 4.2 | 3.1 | 7.1 | 2.6 | 10.1 |
| 남자 | 3.0 | 2.0 | 4.9 | 2.9 | 3.6 |
| 여자 | 6.6 | 5.3 | 11.5 | 2.1 | 19.5 |
| 청년층 | 8.9 | 7.7 | 15.9 | 6.5 | 14.7 |
| 남자 | 8.9 | 7.4 | 15.6 | 7.8 | 9.0 |
| 여자 | 9.0 | 8.1 | 16.3 | 5.0 | 20.7 |
| 장년층 | 2.6 | 1.7 | 4.3 | 1.5 | 8.9 |
| 남자 | 1.4 | 0.7 | 2.1 | 1.7 | 1.3 |
| 여자 | 5.9 | 4.4 | 10.0 | 1.1 | 21.2 |
| 노년층 | 3.3 | 1.0 | 4.2 | 0.6 | 10.1 |
| 남자 | 3.1 | 1.1 | 4.2 | 0.8 | 3.6 |
| 여자 | 3.7 | 0.7 | 4.4 | 1.3 | 19.5 |

주 : 1) 실업률은 [그림 1]에서 $(D/C+D) \times 100$ 이며 잠재실업률은 $(D+G)/(C+D+G) \times 100$ 이므로 실업률과 잠재실업률의 합이 사실상의 실업률과 같게 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2) 주관적 잠재실업률이란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으면 일할 의사가 있는 자”와 취업자 및 실업자의 합계에서 전자, 즉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할 주관적 의사를 갖고 있는 자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페널』, 1993, 원테이프 ; 『고용구조통계조사』, 1993.

또한 청년층 여성에 못지않게 높다.

둘째, 전체의 잠재실업률은 3.1%로 전체 실업률 4.2%보다 1.1%포인트 낮다.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은 남자 7.4%, 여자 8.1%이다. 잠재실업자를 고려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7.1%에 이르며, 청년층의 사실상의 실업률은 전체 15.9%, 성별로는 남자 15.6%, 여자 16.3%로 엄청나게 높다.

셋째, 『페널』에서 청년층의 사실상의 실업자가 청년층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이므로(표 2 참조), 1992년 『고용구조』에서 나타난 18~29세의 민간인구 8,544천명의 9.0%가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추론하면, 절대적 크기로 측정하면 765천명이 사실상의 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⁸⁾ 여기에다 15~17세 연령층의 실업자 26천명을 포함하면⁹⁾ 청년층에서

8) 『고용구조』에 의하면 15~19세 민간인구가 3,732천명이므로 18~19세의 민간인구는 3,732천명의 40%인 1,493천명, 20~24세는 3,239천명, 25~29세는 3,770천명으로 18~29세는 8,502천명으로 추산되고, 이 연령계층에서 『페널』에 포함된 사실상의 실업률 9.0%가 옳다고 하면 이 비율을 곱했을 때 사실상의 실업자는 765천명이 된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795천명이 넘으며, 약 80만명에 이르는 사실상의 실업자의 크기는 1993년 전산업 노동력 부족인원인 17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걸쳐 온 지속적인 인력난은 특히 청년층 노동력의 활용도를 전혀 높이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실패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종전에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여성노동력과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청년층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구조의諸지표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인『고용구조』를 이용하여『패널』에 나타난 청년층 고용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고용구조』의 전체 연령층의 실업률, 전연령층의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은 각각 2.6%, 2.9%, 2.1%이나 청년층의 전체, 남자, 여자의 실업률은 각각 6.5%, 7.8%, 5.0%로서 청년층 실업 문제가 부각되어 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고용구조』에 나타나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실업률에 비해 최소한 4배 이상 높다.『고용구조』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지금이라도 알맞은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하겠음’이라고 응답한 자를 ‘취업할 주관적 의사を持つ 있는 자’라고 했을 때 <표 2>의 주관적 잠재실업률이란 취업자, 실업자, ‘취업할 주관적 의사を持つ 있는 자’의 합에서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러면『패널』의 잠재실업률을 객관적 잠재실업률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고용구조』에서의 주관적 잠재실업률은 전체 10.1%, 남자 3.6%, 여자 19.5%로서『패널』의 객관적 잠재실업률인 전체 3.1%, 남자 2.0%, 여자 5.3%보다 크게 높으며, 여자의 경우 전자는 후자보다 3배 이상 높다.『고용구조』에서 청년층 전체의 주관적 잠재실업률은 각각 14.7%로서 장년층의 8.9%, 노년층의 10.1%보다 훨씬 높다.『고용구조』에서 나타난 실업률, 주관적 잠재실업률의 검토에서도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취업자=100)

| | 전연령층 | 청년층 | 장년층 | 노년층 |
|----|------|------|------|------|
| 남자 | 9.9 | 17.6 | 7.7 | 11.5 |
| 여자 | 29.8 | 26.1 | 32.6 | 28.1 |
| 평균 | 16.2 | 21.7 | 14.2 | 17.0 |

자료 :『패널』, 1993, 원데이프.

9) 15~17세는 거의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감안하여 15~17세 연령계층의『고용구조』에서 나타난 실업자만 포함시킨다.『고용구조』에서 15~19세 연령계층의 실업자는 43천명이므로, 이를 18~19세의 실업자는 43천명의 40%인 26천명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실업자수와 사실상의 실업자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근로자의 수 또한 대단히 많아 청년층 고용불안정인구는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에는 취업자 중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그것을 연령과 관계없이 30%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대단히 높고, 청년층 남성의 경우에도 17.6%에 이른다. 파트타임 근로형태가 크게 보급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일본(1990)의 경우 15~29세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13.5%이다.¹⁰⁾ 이에 비해 『패널』에서는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1.7%로서 일본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일반근로자보다 짧은 자로 정의되고 있고, 『패널』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계약,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정규직 중에서 직장에서 요구하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가 비정규직으로 정의되고 있어 다소간 정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정의되어 온 비정규직의 정의(주당 36시간 미만 취업한 자를 비정규직이라 하고 그 이상은 정규직)는 잘못된 정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통상적인 비정규직 정의에 의하면 『고용구조』에서 15~29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근로형태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형태의 과다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이 청년층 고용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III. 本 論文의 接近方法 : 職場探索 失業模型의 延長

1. 標本의 制限과 青年層 失業問題 深刻性의 推定方法

노동자의 실업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을 우선 명확히 하고자 한다. 『패널』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약·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해 현재 일정한 직장에 정규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직장을 찾고 있느냐를 묻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보상요구임금, 희망 직종, 희망 산업, 희망 기업형태 등을 묻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봉급생활자와 정규직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직장을 찾고 있는 실업자 및 잠재 실업자를 표본으로 하되 비진학자로 표본을 제한한다. 지난주 기준 노동력상태가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요구임금, 희망 직종, 희망 산업, 희망 기업형태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제외된다. 따라서 표본은 비진학자로서 정규직 구직

10) 박기성(1994), p.54

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실업자와 정규봉급생활자로 구성된다. 정규직 구직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실업자는 $SEARUN_i = 1$ 이며, 정규봉급생활자는 $SEARUN_i = 0$ 의 값을 가질 때, 구직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실업자가 될 확률을 로짓(logi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_i 를 직장탐색에서 기대되는 이익과 직장탐색비용을 고려한 후의 직장탐색의 순기대이익이라고 하고 I^* 를 관찰되지 않는 임계값(critical threshold)이라고 했을 때, 직장탐색실업을 행하는 것을 $SEARUN_i$ 라고 표현한다면

만약 $I_i > I^*$ 이면 $SEARUN_i = 1$ (1)
 $I_i > I^*$ 이면 $SEARUN_i = 0$

로 표시된다. 따라서 식 (1)은 직장탐색실업의 결정 규칙이 된다. X 를 설명변수 벡터 (vector), a 를 파라메타 벡터라고 할 때, I_i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만약 I^* 가 로지스틱 함수(logistic function)라는 형태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지닐 때 직장탐색 실업확률은

$$P(\text{SEARUN}_i = 1) = P(I_i > I^*) = \frac{1}{1 + e^{-I_i}} = \frac{1}{1 + e^{-X_i \sigma}} \quad \dots \dots \dots \quad (3)$$

로 표현된다. 여기서 $P(\text{SEARUN}_i=1)$ 을 P_i 로 표시하고 P_i 와 $(1-P_i)$ 간의 비율의 자연대수값을 L_i 로 표시하면

이 된다. L_i 를 로짓(logit)이라 부르며 식 (5)와 같은 모형을 로짓 모형(logit model)이라 부른다. 우리는 식 (5)를 최우추정법에 의거 추정하게 된다.

X_i에 우리는 이 논문의 1차적 관심사인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청년층 더미변수(YOUNG), 노년층 더미변수(OLD)를 포함시켜 여타 조건이 통제된 후에도

30~54세인 장년층에 대비하여 청년층의 실업확률이 높은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2. 補償要求賃金과 潛在市場賃金¹¹⁾

직장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실업자가 될 확률은 실업자의 보상요구임금이 잠재시장임금보다 클 때 더 높아진다. 우리는 보상요구임금을 RWAGE, 잠재시장임금을 IWAGE라고 정의할 때 그 차액, 즉 RWAGE-IWAGE를 DWAGE로 정의한다. 즉 직장탐색비용 등 여타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DWAGE가 클수록 실업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직장탐색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X_i 에 우리는 전통적인 직장탐색 실업모형을 따라 DWAGE_i를 포함시킨다.

DWAGE라는 변수에서 보상요구임금(RWAGE)은 『패널』에서 “귀하가 생각하기에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수준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그 척도로 이용한다.

실업자의 잠재시장임금의 추정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규직 봉급생활자의 임금함수의 추정에 의거하여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봉급생활자의 월급여를 종속변수로 하는 임금결정방식을 추정한 후(부표 1 참조) 실업자의 학력, 경력¹²⁾, 기혼 여부¹³⁾라는 인적속성을 대입하고 동시에 실업자의 희망 직종, 희망 산업, 공기업 취업희망 여부 등의 정보를 외삽하게 되며, 노조조직률에 있어서는 성별 민간·공기업별 평균조직률을 적용하게 된다. 즉 근로자가 희망 직종, 희망 산업, 희망 기업에 근무할 때 근로자가 갖는 인적특성을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추정한 것을 잠재시장임금(IWAGE)으로 우리는 정의한다.

『패널』에서 직접 이용가능한 정보인 RWAGE와 임금결정방정식을 이용하여 예측되는 정보인 IWAGE를 이용하여 DWAGE가 계산된다. 이때 정규취업자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보상요구임금은 실제시장임금과 동일하므로 DWAGE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만약 DWAGE가 개인의 실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면, 이는 실업

11) 이 논문을 쓰는데 있어 가장 많이 참조된 논문은 Choongsoo Kim(1980)이다. Choongsoo Kim은 美國의 10대 남자 실업확률을 추정하는데 보상요구임금과 잠재시장임금의 개념을 이용하였는데 본 논문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그의 방법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가구소득을 실업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본 논문의 새로운 기여가 될 것이다.

12) 실업자의 근속년수는 당연히 0으로 취급된다.

13) 임금결정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추정에 사용된 변수는 <부표 1>에 실려 있다.

자의 보상요구임금이 잠재시장임금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업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의 성격이 자발적·마찰적 성격을 지닌다. 만약 DWAGE가 개인의 실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거나 負의 부호를 가지면 이는 비자발적·구조적 실업을 함축하게 된다.

3. 家口所得

청년층 더미변수(YOUNG), 보상요구임금의 잠재시장임금에 대한 상대적 크기(DWAGE) 이외에 본 논문에서 핵심변수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년간 평균 가구소득이다. 낮은 가구소득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실업확률을 높이리라고 우리는 예상한다.

첫째는, 고용보험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가족중심 사회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조가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소득가구의 실업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가구의 실업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패널』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가 266명인 데 비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직장 및 구직결과 대기' 14)(19명)과 '취직시험 공부'(140명) 등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취직시험 공부와 직장 및 구직 결과 대기를 장기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높은 가구소득이라고 할 것이며, 낮은 가구소득에서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즉 낮은 가구소득은 실업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구직행위가 주로 緣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¹⁵⁾, 가구소득을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리변수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14) 직장 및 구직결과 대기기간이 30일 이내인 자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패널』은 이 기간에 대한 검증이 없으므로 구직결과 대기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된다.

15) 『패널』에 의하면 緣故에 의한 정보획득은 정규봉급생활자 중 57.0%에 이르며, 그 다음이 신문·벽보 등의 구인광고 15.6%, 학교(학원) 소개 13.1%, 취업전문지 3.8%, 공공직업안내 2.3%, 사설직업안내 0.8% 순이다. 『패널』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는 비정규직·실업·미취업자의 경우 '아는 사람을 통하여'라는 연고를 통한 구직방법은 42.3%, 그 다음이 신문·벽보 등의 구인광고 19.8%, 취업전문지 15.4%, 학교(학원) 소개 13.8%, 공공직업안내 3.8%, 사설직업안내 1.1%이다. 美國에서는 공개적인 구직행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근대적인 고용관행으로 연고채용이 약과반수 또는 그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고용관행에서 가구소득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대리변수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연고에 의한 구직과 취업의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실업확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연고채용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여타의 조건이 일정불변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득가구의 개인이 직면하는 직장분포(job offer distribution) 가 저소득가구의 개인이 직면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 직장탐색 실업모형에 가구별 소득을 포함시킨다.

을수록(고소득가구일수록) 연고에 의한 구직과 직장대기가 많아지고 이들은 실업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간의 노동력상태 이동을 경험하기가 쉬우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저소득가구일수록) 연고에 의한 구직과 취업의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저소득가구원일수록 주변적 근로자(marginally attached to the work force) 또는 附加노동자(additional worker)로서 높은 실업확률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시간배분을 크게 집안일(home work), 시장일(market work), 그리고 여가(leisure) 3개 부문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집안일의 금전적 중요성이 커지는 한, 여성의 요구임금수준은 높아지며, 따라서 비경제 활동확률을 높이게 된다는 점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집안일의 금전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한, 시장임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경제활동확률은 높아진다. 가구소득의 크기가 보통 육아, 자녀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비하여 생계 유지, 주택마련 등 현재의 삶의 향상을 위한 지출에 대한 상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고소득층일수록 將來財, 자녀의 후생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며, 저소득층 일수록 現在財에 더 관심을 두게 되어 시장임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 여성은 경제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의 핵심은 경제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는 한 저소득층 여성은 주변적 근로자로서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들기 쉬우며, 실업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의 실업확률은 고소득가구의 구성원보다 실업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우리는 전통적 직장탐색모형에 가구별 소득(HOUSEM)¹⁶⁾을 포함시킨다.

4. 模型의 定型化

YOUNG, DWAGE, HOUSEM이라는 핵심변수 이외에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서

16) 혹자는 본인소득 제외 가구소득이 보다 적합한 변수라고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장기실업자의 경우, 실업으로 인해 저소득이 되며, 그 결과 저소득가구의 실업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통계적 결과는 同語反覆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본이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실업자로 나뉘어져 있을 때, 취업자의 경우 본인소득 제외 가구소득은 계산될 수 있으나 사실상의 실업자에 판해서는 실업기간과 취업기간(work history)에 관한 정보가 없어 본인소득 제외 가구소득이 계산될 수 없다는 단점을 『패널』은 갖고 있으므로, 본인소득 제외 가구소득 또한 통계적 편향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표로서의 가구소득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본인소득 포함 연평균 가구소득의 월할분을 이용하기로 한다.

<표 4> 사용된 변수의 정의

| | 변수에 대한 설명 |
|--------|--|
| SEARUN | 사실상의 실업자로서 현재 정규직장을 구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1, 「패널」에서 조사대상자가 현재 하고 있는 주된 활동이 봉급생활(상근직, 정규피고용)이면 0인 더미변수 |
| LNWZGE | 월평균 급여의 자연대수값. 단위는 원. 월평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월고정급여(기본급, 수당)+월변동적 급여(성과급, 초과근무수당)+월평균 상여금] |
| EDMIDD | 중졸 이하 학력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 EDTECH | 전문대졸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
| EDUNIV | 대학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고졸이면 $EDMIDD=EDTECH=EDUNIV=0$ |
| CARR | 학교 졸업후 현직장 이외에서의 외부경력년수(연령-교육년수-근속년수-6) |
| CARRSQ | 외국 경력년수의 제곱항 |
| TEN | 현직장 근속년수 |
| TENSQ | 근속년수 제곱항 |
| SEX | 성 더미변수, 남자=1, 여자=0 |
| MARRD | 결혼 여부 더미변수, 기혼=1, 미혼·이혼·별거·사무직=0 |
| BLUE | 직종 더미변수, 생산직=1, 사무직=0 |
| FSIZE1 | 기업규모 더미변수, 1인 이상 9인 이하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FSIZE3 | 기업규모 더미변수, 100인 이상 299인 이하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FSIZE4 | 기업규모 더미변수, 3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FSIZE5 | 기업규모 더미변수, 1,000인 이상인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 기업규모가 10인 이상 99인 이하는 기준그룹임 |
| UNION | 노조조직 여부에 관한 더미변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GOVT | 정부부문·공기업 여부에 관한 더미변수, 정부부문·공기업에 취업해 있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MFG | 산업더미 변수, 광공업=1, 그 외=0 |
| ILL | 건강 불만족도에 대한 더미변수, 본인의 건강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약간 불만족스러운 경우=1, 건강 만족도가 보통, 만족,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0 |
| CITY | 6대 도시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 거주하는 경우=1, 그렇지 않은 경우=0 |
| HOUSEM | 연간구소득의 월할분, 단위는 만원. 가구소득에는 지난 1년간 본인의 소득, 식구 중 봉급생활자의 소득, 식구 중 자영업자 또는 농림수산업자의 비용 제외 순수입, 식구 중 비정규직 직장을 가진 자의 수입, 부업수입뿐만 아니라 식구 중 지난 1년간 저축, 채권,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과 소유한 토지나 주택건물 등으로부터 임대소득, 매매차익, 정부로부터 이전소득, 친지(예컨대 부모)로부터 아무 대가의 지불없이 받는 보증금 등을 포함하고 있음. 연간구소득을 12로 나누어 가구소득의 월할분이 계산됨. |
| YOUNG | 응답근로자의 나이가 18~29세이면 1, 아니면 0 |
| OLD | 응답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1, 아니면 0 |
| | 응답근로자의 나이가 30~54세이면 $YOUNG=OLD=0$ |
| MRS | 응답자가 여가활동을 위해,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일할 시간을 줄일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0, 1주일에 1~2시간 줄일 용의가 있으면 1.5시간, 1주일에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일할 시간을 줄일 용의가 있다면 각각 3.5, 5.5, 7.5시간의 값을 가짐. |
| DWAGE | 보상요구임금에서 잠재시장임금을 뺀 금액. 구체적 계산방법은 본문 참조. |

학력, 기혼 여부, 건강, 여가에 대한 선호도, 도시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을 기준그룹으로 하여 중졸 및 그 이하의 학력더미는 EDMIDD, 전문대졸더미는 EDTECH, 대졸더미는 EDUNIV로 측정하였고, 개인의 건강은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 또는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하면 1이고 아니면 0인 ILL 더미변수로 표시하였다. 교육과 건강은 직장탐색비용과 직결된다. 또한 직장탐색비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논의되는 6대 도시지역 거주 여부(CITY 더미변수)가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인 성(SEX), 결 혼여부(MARRD), 여가에 대한 선호도(MRS) 등이 통제된다. 보다 자세한 변수의 정의는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식 (2)의 X_i 를 다음과 같이 정형화할 것이다.

X=(EDMIDD, EDTECH, EDUNIV, YOUNG, OLD, MARRD, ILL, MRS,
CITY, HOUSEM, DWAGE) (5)

결국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주요 가설은 다음 세 가지가 된다. 첫째, 청년층의 실업확률이 학력, 성, 기혼, 여가선호도, 6대 도시지역 거주여부, 가구소득, DWAGE를 고려한 후에도 실로 높은지 여부, 둘째, 우리는 전통적 실업확률 결정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DWAGE가 직장탐색 실업확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지 여부, 셋째, 저소득가구층일수록 실업확률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IV. 失業確率의 推定과 그 結果

실업률의 추정 결과는 남녀별로 나누어 <표 5>에 실려 있다.

남자, 여자의 실업률모형의 추정결과 중 중요한 것들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타 조건들이 통제된 후에 청년층과 노년층의 실업확률은 남자의 경우는 장년층보다 높으나,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청년층 실업문제는 남자에 국한되며, 여성의 실업문제는 연령과 독립적이라고 할 정도로 전연령층의 문제이다.

둘째, 기혼남성은 미혼남성보다 실업확률이 낮으나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실업확률이 높다. 남성은 청년층 더미변수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젊은 미혼남성의 실업확률이 높아 일관성을 지닌다. 기혼여성의 실업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여성 중 보다 나이든 계층의 고용문

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셋째, 학력이 실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남자의 경우 고졸자를 기준으로 중졸학력 이하인 자의 실업확률이 높을 뿐, 대졸자나 전문대졸자라고 하여 고졸자보다 체계적으로 다른 실업확률을 가지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는 학력이 실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가구소득은 남녀 모두의 경우 실업확률에 負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저소득가구일수록 실업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실업이 경력(career)의 단절로 이어져 장래의 임금상승 전망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저소득가구 구성원의 실업은 장래의 저임금으로 귀결되어 소득불평등이 세대간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분단되어 있어(조우현 : 1992, 1993, 정병석 : 1994) 저소득가구의 개인은 2차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의 저임금기업에 고용의 기회를 얻고, 고소득가구의 개인은 1차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의 고임금기업에 고용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저소득가구의 높은 실업확률로 인하여 저소득가구의 개인과 고소득가구의 개인은 非경쟁집단화(non-competing group)할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 결과 현재의 소득불평등은 세대간보다 큰 소득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 실업확률 결정요인의 로짓(logit) 분석

| | 남 자 | 여 자 |
|----------------|--------------|--------------|
| INTERCPT | -0.921(2.71) | -1.744(4.88) |
| EDMIDD | 0.655(2.32) | -0.193(0.71) |
| EDTECH | 0.008(0.02) | 0.357(1.19) |
| EDUNIV | -0.397(1.46) | 0.009(0.03) |
| YOUNG | 0.799(3.10) | 0.121(0.45) |
| OLD | 1.135(3.34) | -0.343(0.71) |
| MARRD | -2.121(8.65) | 1.265(5.24) |
| ILL | 0.510(1.89) | -0.165(0.67) |
| MRS | -0.056(0.99) | 0.066(1.47) |
| CITY | -0.002(0.01) | -0.070(0.38) |
| HOUSEM | -0.006(4.91) | -0.002(2.46) |
| DWAGE | -0.052(5.57) | 0.019(2.69) |
| -2 Log L | 798.1 | 775.7 |
| N | 2195 | 841 |
| 종속변수의 값이 1인 경우 | 145 | 166 |
| 종속변수의 값이 0인 경우 | 2050 | 675 |

주 : ()안의 수치는 절근적 t값의 절대값임.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패널」.

다섯째, DWAGE는 실업확률에 남녀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의 경우를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의 경우 DWAGE가 높을수록 실업확률이 높게 나타나 전통적 직장탐색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실업문제는 자발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보상요구임금이 잠재시장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잠재시장임금이 성차별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차별의 점진적 해소정책 또한 여성의 잠재시장임금을 높여 여성의 실업확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DWAGE의 계수가 남자의 경우에는 負의 부호를 가지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하다는 것은 보상요구임금이 잠재시장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실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남성의 실업문제는 구인·구직간의 연결 불일치(job mismatch)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V. 結論과 政策的 含意

이 연구는 잠재실업자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자의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였다. 이 연구의 주된 공헌은 잠재시장임금에 대비한 보상요구임금의 상대적 크기(DWAGE로 정의됨)를 실업확률 결정요인으로 도입하였다 는 점과 가구소득이 실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할 때, 이는 남성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성의 실업문제는 특정 연령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확률모형 추정결과에 의거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자발적·마찰적 실업의 특징을 가지며, 여성의 실업문제 해결은

- ①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상요구임금을 낮추게 유인함.
- ② 교육기회 및 직업훈련에의 참여확대로 여성의 잠재시장임금을 높임.
- ③ 성차별의 점진적 해소로 여성의 잠재시장임금을 높임.

등에 의해 가능함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 실업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층 남성에 있어서는 실업이 비자발적·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청년층 실업문제의 해결은 구인·구직의 불일

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실업문제의 해결은

- ① 산업수요와 정합성·일치성을 갖도록 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를 개편하여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구인·구직 불일치의 해소
- ② 근무환경, 안정성, 장래성 등 비금전적 측면에서 노동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기업 내부의 노동자 경력개발경로를 기업이 설계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구인·구직 불일치의 해소

등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다.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저소득가구 개인의 실업확률은 고소득가구 개인의 실업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학력(중졸 이하) 남성의 경우 실업확률이 높게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저학력 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직업훈련제도 및 공립공업고등학교에 있어서 저소득가구의 저학력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된다. 이는 실업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세대간 확대를 막는 데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실업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인력정책[정병석(1994), 어수봉(1993), 정인수(1995), 윤진호(1994)] 등에 있어서는 저소득가구의 저학력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저소득가구의 저학력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 이 논문의 한계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표본선택편향성(sample selection bias)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실업자의 잠재시장임금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 봉급생활자의 임금함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정규직 봉급생활자의 관측된 임금은 정규직 봉급생활자로 일하는 자에게만 관측될 뿐 다른 사람에게는 관측되지 않는다. 모집단에서 정규직 봉급생활자로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관측되지 않는 특성(unobserved characteristics)의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 봉급생활자로 일하는 자의 임금함수의 추정계수는 편향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정규직 봉급생활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관측되지 않는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정규직 봉급생활자로 일하는 자의 임금함수의 추정계수는 편향성을 갖는다. 이는 Heckman의 표본선택편향성 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패널』에서는 정규직 봉급생활자가 될 확률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개인의 능력변수가 거의 없어 표본선택편향성을 극복한 임금방정식 추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놓는다.

參 考 文 獻

- 박기성,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개혁」,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4. 3/4
분기
- 어수봉, 『우리나라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3. 12.
- , 「우리나라 일공합실태와 노동이동(I)」,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2호, 1995. 3.
- 윤진호,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주호, 『청년층 고용문제와 고용·노동대책』,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보고서 93-15, 1993. 1.
- 정병석, 「한국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행태 연구」, 중앙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6.
- 정인수, 「제조업 전직자 및 실업자 분석과 노동공급정책방향」,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1호, 1994. 12.
- 조우현, 「한국산업의 이중적 구조와 임금결정 메커니즘」, 『경제학연구』, 제40집 제1호, 1992. 6.
- , 「경제력 집중이 임금 및 임금구조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제15권, 1992. 12.
- , 「노동자의 이직성향과 직장만족도」, 『노동경제논집』, 제17권 제1호, 1994. 12.
- , 「전략적 핵심기업의 인적자원개발방식—그 중요성과 실상」, 『경제학연구』, 제43집, 1995(근간)
- 최경수, 「80년대 이후의 한국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미발간 원고, 1995. 4.
- Kim, Choongsoo, "Reservation Wage vs. Imputed Wage : A Reexamination of Teenage Male Unemployment,"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Ohio State University, July 1980.

<부표 1> 임금결정요인의 최소자승법 추정치

| | 남 자 | 여 자 |
|----------------|----------------|-----------------|
| INTERCEP | 13.515(442.52) | 13.211(361.80) |
| EDMIDD | -0.161(-6.36) | -0.1501(-2.71) |
| EDTECH | 0.102(3.91) | 0.042(0.94) |
| EDUNIV | 0.199(10.18) | 0.238(5.35) |
| CARR | 0.021(8.32) | 0.001(0.38) |
| CARRSQ | -0.0005(9.57) | -0.00005(0.57) |
| TEN | 0.023(7.71) | 0.035(5.58) |
| TENSQ | -0.0003(3.39) | -0.0001(0.71) |
| MARRD | 0.142(6.10) | 0.077(2.09) |
| BLUE | -0.110(6.47) | -0.1207(3.29) |
| FSIZE1 | -0.073(3.39) | -0.149(4.26) |
| FSIZE3 | 0.0104(0.47) | -0.034(0.75) |
| FSIZE4 | 0.005(0.22) | -0.0505(0.99) |
| FSIZE5 | 0.064(2.74) | 0.141(2.61) |
| UNION | 0.042(2.38) | 0.071(1.87) |
| GOVT | -0.064(3.02) | -0.031(0.64) |
| MFG | 0.003(0.24) | -0.041(1.25) |
| R ² | 0.342 | 0.356 |
| N | 1906 | 576 |

주 : ()안의 수치는 t값의 절대값임.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패널』.